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기업·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(“24.12.18.)」 후속조치로,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 한 '14.7.14일 이전에 지정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변경·수립할 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바목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) 2014년 7월 14일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
- 2)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산업단지의 체계적·계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)</p> <p>① 「산업 입지법」 제6조·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주요내용과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토지이용계획</p> <p>가. ~ 마. (생략)</p> <p>바.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시 「국토계획법」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</p>	<p>제13조(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토지이용계획</p> <p>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시 「국토계획법」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u>다만,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) 2014년 7월 14일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</u></p> <p><u>2) 실시계획승인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산업단지의 체계적·계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</u></p>